재활용 가능 표시에 관한 규정

Recycling Symbol

환경부 폐기물정책과

1. 규정

소비자보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가 물품을 사용한 후에 발생되는 폐물품의 재활용가능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기 위한 재활용가능표시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자원의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물품을 사용한 후 발생되는 폐기물이 재활용이 가능한 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활용가능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현 여건에서 경제적, 기술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재활용가능표시"라 함은 사용 후 재활용가능폐기물로 되는 물품에 대하여 2에 설명한 대로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재활용 가능표시 신청) ① 재활용가능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활용가능표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가능표시를 하고자 하는 물품의 재질 · 성상에 관한 사항

2) 재활용가능표시를 하고자 하는 물품의 생산, 판매, 폐기물의 회수체계에 관한 사항

3)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재활용제품의 용도 등 소비실태에 관한 사항

4) 재활용가능표시 도안이 포함된 상표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표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물품의 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품이 생산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표시가 가능함을 통보받은 후 그 물품을 생산 즉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신청서의 심사) ① 공사의 사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표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내용에 의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을 위하여 공사의 사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출장하여 확인하거나 재질 · 성상에 대한 공인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공사의 사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재활용 가능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재활용가능표시가 가능함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재활용제품의 판매가격 등 경제여건이 변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공사의 사장에게 통보하고 재활용가능표시의 표기를 중지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표시 대상물품이 판매되는 지역 중 재활용이 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을 때에는 그 지역에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재활용가능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기타 공사의 사장이 재활용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재활용가능 표시방법) ① 재활용가능표시를 할 때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물품의 크기에 따라서 재활용가능표시의 위치 및 크기를 정하여야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질분류 표시를 하고 있는 물품(금속캔, 합성수지용기)은 재질분류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크게 표시하여 재질분류표시도안 밑에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재활용가능표시는 인쇄 등이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활용공정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재활용가능표시를 하는 자의 준수사항은 2-3에 나타낸 것과 같다.

제8조(표시의 사용금지) ① 재활용가능표시를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활용가능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소비자가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등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활용가능표시를 하고 있는 경우

3) 기타 재활용품을 위한 분리수거 등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경우에 재활용가능표시의사용자에게 재활용가능표시의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9조(보고) 공사의 사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표시를 하도록 통보한 때에는 매달의 통보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활용가능표시대장) 공사의 사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표시의 사용을 통보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재활용가능표시대장을 비치 기록하여 사업자의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활용가능폐기물(제2조제1항 관련)

2-1. 종이류

1) 종이외의 복합재질로 구성되어 재활용에 지장을 주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만, 그 물품의 사용자, 재활용자 등이 이물질을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닐코팅지, 감열기록지(FAX용지) 등 배출량이 적거나 재활용처리 작업이 곤란하여 경제성이 없는 물품은 제외한다.

2-2. 고철류(비철금속 포함)

1) 철 또는 알루미늄외에 복합재질로 구성되어 재활용에 지장을주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만, 그 물품의 사용자, 재활용자 등이 이물질을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캔류, 공기구 · 철사 · 못 · 철판 등 쇠붙이와 양은 · 스테인레스스틸 · 구리 · 알루미늄 샷시류 등 비철금속을 포함한다.

2-3. 유리병류

1) 유리외의 복합재질로 구성되어 재활용에 지장을 주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만, 그 물품의 사용자, 재활용자 등이 이물질을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유백색유리 등 배출량이 적거나 재활용처리 작업이 곤란하여 경제성이 없는 물품은 제외한다.

2-4. 합성수지류

1) 두가지 이상의 복합재질로 구성되어 재활용에 지장을 주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만, 그 물품의 사용자, 재활용자 등이 이물질을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질분류표시를 하고 있는 PETE, HDPE, LDPE, PS, PP외의 재질로 된 물품은 제외한다.

3) 전화기 · 소캣 · 냄비손잡이 등 열에 잘 녹지 아니하는 물품과 음 · 식료품의 포장지 등의 것으로 복합재질 또는 배출량이 적거나 재활용처리 작업이 곤란하여 경제성이 없는 물품은 제외한다.

2-5. 기타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3. 재활용가능 표시(제2조제2항 관련)

3-1. 도안요령

색상은 위의 반원은 녹색과 아래 반원은 청색으로 하거나 전체를 백색바탕에 흑색선으로 할

[그림 1] 도안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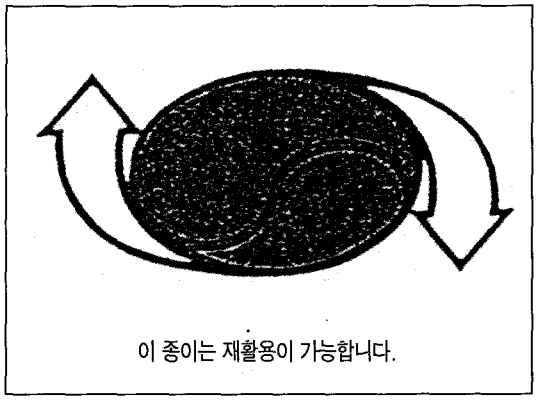

〔그림 2〕 도안요령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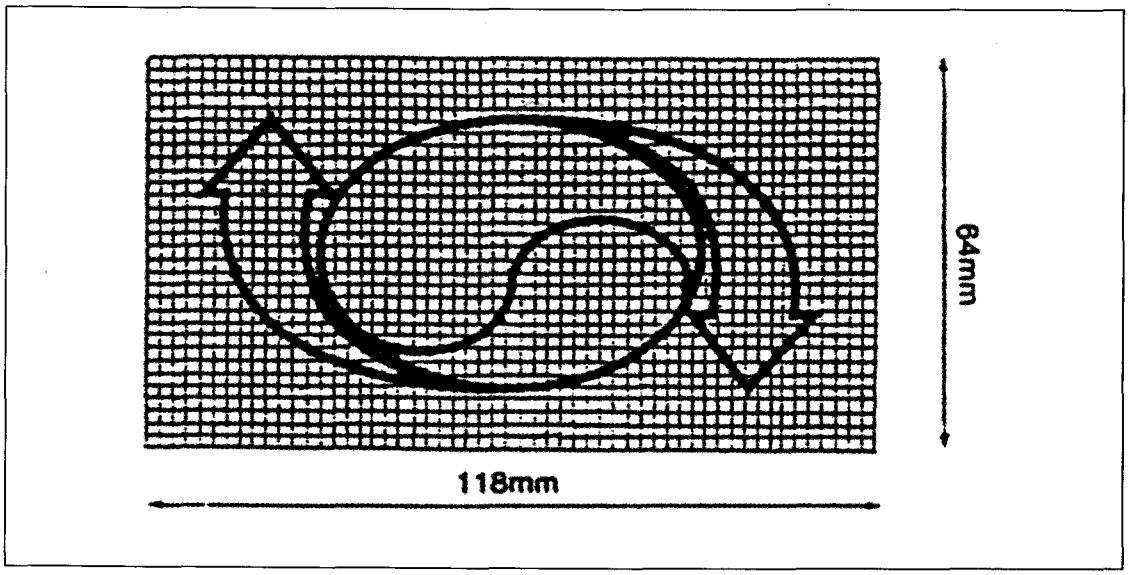

수 있다.

마크는 원본을 확대 · 축소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축소 · 확대가 불가능할 때에는 위 모듈에 의하여 작도한다.

그림 밑의 글씨는 재활용제품을 정확히 알리는 문구로서 사용제품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3-2. 도안설명

우주만물이 생긴 근원이라는 철학사상의 태극마크를 기초로 하고 위의 반원은 육지를 의미하여 녹색으로 하고 아래의 반원은 바다를 의미하여 청색으로 하며 주위의 원은 지구를 의미하고 중간의 곡선은 하천과 육지의 경계를 의미한다. 원 밖의 화살표시는 생태계의 상호순환과 재활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체의 의미는 지구생태계 보전을 위한 재활용을 쉽게 연상할 수 있는 마크이다.

4. 재활용가능표시자의 준수사항(제7조)

1) 재활용이 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판매하는 물품에 "재활용가능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재활용가능표시 물품이 유통되는 지역에서 경제성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활용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역에 판매하는 물품에 "재활용가능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그 폐기물의 수거체계를 유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재활용가능표시"를 한 물품을 판매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4) "재활용가능표시"물품에 대하여는 광고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ko